

## 第 59 回

##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會議錄 第 1 號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時: 1996 年 5 月 27 日 (월) 11 時 00 分

場所: 市民行政委員會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 14面

(11時 00分 開議)

○委員長 玄壽漢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선으로 인해 지난 4월 한 달을 쉬고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방위 태세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안보 불감증에 자성하라는 교훈을 준 점에서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의원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셔서 의원세미나가 힘이 되고 또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정된 안전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洪柱喆 議案係長 洪柱喆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5월 1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 1.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11時 04分)

○委員長 玄壽漢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總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總務局長 吳炳漢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玄壽漢 委員長님 그리고委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市民行政委員會 여러 委員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규정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하며 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

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3월 1일 제143호로 제정된 종로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제 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구청장도 동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구청을 내방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1일부터 시민봉사실에서 동장 명의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업무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사항을 요구한 지침은 내무부지침과 서울시지침이 2월달에 있었습니다. 본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원안대로 개정하여 구청을 내방한 민원인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            |     |
|------------|-----|
| 의 안<br>번 호 | 432 |
|------------|-----|

제출년월일 1996. 5. .  
제 출 자 종로구청장

#### 1. 개정이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구청을 내방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구청장도 동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조, 제18조, 동시  
행령 제45조 및 45조의3

나. 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내무부 지침(주민 13210-122

〈'96. 2. 23〉)

서울시 지침(행정 13210-278

〈'96. 2. 24〉)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  
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br>……………<br>……………                                                                            |
|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br>1. ~3. (생략)<br><br>〈신설〉 |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 ……………<br>……………<br>……………<br>1. ~3. (현행과 같음)<br>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

○委員長 玄壽漢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6년 5월 1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업무가 현재 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온라인제도 시행 등에 따라서 구청 시민봉사실에서도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할 수 있는 위임조항을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골자입니다.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동장 위임 제외대상으로 신설함으로써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발급을 하고 종전대로 동장에게 신청하는 사항은 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규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제1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1항,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6년 2월 24일자로 시달된 서울시 주민등록업무 개선지침이 행정 13210-278호로 기히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업무를 동장이 처리하는 것을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개정은 위임사항을 위임자와 수임자가 동시 향유하는 입법상 모순점은 없습니다라는 주민 편의 증진의 측면과 이를 계량해볼 때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總務局長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文培委員 질의하십시오.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민등록사무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다시 구청장이 구청에서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인데 구청에서 각 동으로 위임한 사무를 다시 구청에서 병행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할 때 거기에 시설, 장비, 인원 등의 소위 수요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산상의 증가라든가 인력의 증가 기타 모든 수반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산처리는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장비를 어떻게 다시 구청에서 통할해서 각 동 것을 다 복사해다가 들여놓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朴文培委員님 질의에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증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히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동장이 죽 해왔는데 주민들 중에는 구청에 다른 업무를 인허가 업무를 보러오셨다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동에 갔다가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는 것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에 제도적으로 동장에게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봉사실에 있는 인력으로 현재 한 명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볼 때 많은 인력이 필요없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한 명 창구 직원

으로 인력은 가능하고 예산도 특별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서 전산 운영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주민등록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구에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지금 각 동 거주 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60원인가 되는데 타 관내 것을 하려면 천원인가 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구청에서 발급할 때 그 수수료는 그 거주 동하고 구분이 되어서 받는지 아니면 똑같이 정수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동일한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이게 등·초본 발급만 대행하는 거죠? 전입신고도 할 수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그것은 안됩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예, 吳錦南委員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이래서 제1항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초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한다고 했는데 실지 여기에 보면 등·초본을 열람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은 현재 구청장 명의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열람하는 것은 이 등·초본이 동에 있는데 그 열람이 과연 구에서 가능하겠는가, 구청에도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예,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위원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洪起瑞委員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공부를 신청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금액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현재 금액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일정하게 발급을 했습니까? 금액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그 돈을 떠나서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수수료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總務局長 吳炳漢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민봉사실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종로1·2가동에서 한 명이 파견 나와서 동장 명의로 발급을 해줬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장 명의로 발급할 때는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러니까 전자에는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수수료가 달랐죠?

○總務局長 吳炳漢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 종로1·2가동 동장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다만 장소만 시민봉사실의 민원창구에서 발급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은행연합회에서는 등·초본도 각 시중은행에서 발급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은행연합회에서는 등·초본도 각 시중은행에서 발급을 하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1·2가동 직원이 와서 우리 종로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가동 주민이었으면 이 요금을 받고 다른 타동의 경우는 요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鄭泰淳委員 洪起瑞委員께서 관할 동에서 하면 금액이 그렇고 구청에서 하면 천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주민들도 여기 와서 발급받아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總務局長 吳炳漢 1·2가동에 있는 주민은 팬

○鄭泰淳委員 그러면 종로 타동 관내라면 수수료가 다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종로구 주민도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청장 명의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600원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鄭泰淳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委員長!」하는 위원 있음)

예, 丁昌熙委員 질의하십시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21개동의 주민들이 종로구청에서 주민등록표를 발급할 적에는 종로1·2가동 동장 명의로 해서 발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總務局長 吳炳漢 아니, 우리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지침이 여기 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때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종로1·2가동 동장 명의로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청동 주민이 삼청동 동장 명의로 해서 발급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나갑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아니요. 1·2가동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丁昌熙委員 1·2가동장 명의로 해서 어느 동에서 보았든지 간에 ‘동장 이동찬’ 해가지고 발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현행 시행 중인 사항으로 관계법규를 보완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현재 그 절차는 같은데 현재 발급하고 있는 기관이 종로1·2가동장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권한을 다시 동장과 구청장이 갖게 되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발급합니다. 앞으로는.

○丁昌熙委員 지금 이러한 사항 중에서 수임자하고 위임자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업무 중에서 동에 위임을 했는데 구청장 수임자하고 위임자하고 어떤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그것은 아직 통계는 없습니  
다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상 이 주민 편의를 제공한  
다는 뜻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구청에서 하는 것  
도 참 매우 타당성이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주  
민등록 발급 업무를 보면서 주민들이 그동안 시  
세나 구세에 대한 체납분도 사실상 발급 업무를  
보려갔을 적에 그것으로 해서 발급을 안해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미안한 감을 갖  
고 체납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납부를 해  
야 되겠다는 그런 축구의 뜻도 있었습니마마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이  
러한 업무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은 많이 회색된다고 저는 생각해  
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丁昌熙委員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분석  
한 말씀대로 우리가 특별한 예는 없습니마마는  
우리 주민한테 편리가 많이 간다는 차원에서 동  
장하고 구청장에게 같이 등·초본 발급을 해주는  
개정안인데 현재 체납도 금년에 타이콰이 설치되  
어서 금년 7월달부터는 모든 주민들의 체납이 전  
산화가 되어서 각 실과에서 동 창구에서 주민등  
록번호만 넣으면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의 체납  
현황이 개인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봉  
사실에서 구청장 명의로 등·초본 발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제증명 발급으로 체납  
독촉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우려 안하셔  
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丁昌熙委員 이런 제증명을 발급하는 데 있어  
서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발급을 안해주거나 열람을 거부할 수는 있는 것  
은 없습니다. 단지 미안한 감을 좀 유발시키는 효  
과가 많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지금 구에서는 일  
괄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체납 사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다소 그 부분하고는 다른 뜻이 아니었는가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그동안에 1·2가  
동 동장 명의로 발급할 때보다는 종로5·6가동  
주민이 구청에 와서 발급 신청을 했을 적에는  
종로5·6가동 동장 명의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삼청동 주민이 왔을 때는 삼청동 동장  
명의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위임된 사항  
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행정 동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이 왔을 적에는 그 동장 명의로 발급  
해주는 것이 원래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위임이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  
떠세요?

○總務局長 吳炳漢 丁委員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마마는 권한은 원래 구청장 권한이기 때  
문에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주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다시 구청장에게 오면 구청장  
명의로 발급한다, 동장에게 가면 동장 명의로  
발급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  
다. 동장 명의로 발급이 된다고 해서 어떤 증  
명의 효력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제증  
명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만 주민의  
편익이 어느 것이 편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  
각해볼 때 만약 丁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  
럼 삼청동 주민이면 삼청동 동장 명의로 발급  
해줄 수도 있습니마마는 동장 직인이라든가 이  
런 것을 다시 21개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예산의 낭비이고 또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러한 문제는 각 어느 시·군·  
구에서도 다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일은 없다고 생  
각합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지역 주민  
이 종로구청에 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했  
을 때 명의를 누가 내게 됩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구청장 앞으로 신청하면 구  
청장 명의로 발급하게 됩니다.

○丁昌熙委員 타지역 주민이 왔을 적에는 종로

구청장 명의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예. 그래서 앞으로 내후년쯤 이 되면 전자 주민등록카드가 발급됩니다. 하루하루 이런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주민등록 재발급이 그때쯤 되면 없어지지 않는가, 모든 주민들이 전자주민등록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모든 18개 기능이 다 들어있는 주민등록 전자카드가 발급될 것을 내무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이게 현재 주민등록사무의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타구에서도 이 사항이 진행 중인 것입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예,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종로구청장 명의로 발급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게 관련법규를 보니까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제1항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위임되었으니까 어차피 관장을 하는 거고 또 지금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사항 중에서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뭐 등등해서 수수료를 첨부해서 이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도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굳이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병행해서 공유를 하면서 구청장 명의로 발급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을 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적으로 발급이 동장 명의로 안되어 있는 것을 구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편의를 확대시켜주자는 그런 뜻도 있다고 치면 또 구청에서 발급하면서 그런 동장 명의로 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1·2가동 동장 명의로 해가지고 발급해주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개선해서 어떤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뜻이 없다고 치면 당연히 구청장 명의로 해서 합법적으로 절차상으로 하자없이 개정하는 것

이 타당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주민들은 편의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누구 명의로 되었던 동장 명의로 되었던 구청장 명의로 되었든.

○總務局長 吳炳漢 예, 그것을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어디에서 했냐면 구청을 내방한 민원인 중에서 삼청동 주민께서 우리 구청을 내방해서 민원 일을 하다가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할 경우에 삼청동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자체에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로구청에서 맨 먼저 이러한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이것이 내무부까지 건의가 되어서 내무부에서 참 좋은 제도다, 주민을 위한 참 좋은 제도다 해서 지침이 나왔던 거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의 실적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서울시 전역에 이 제도가 파급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이게 등·초본 원장이 없는 곳에서도 시내의 은행에서까지도 발급을 해주자 하는 은행연합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위법인 문제사항은 없고 민원 서비스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개선의 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丁昌熙委員 이게 개정되면 달라지는 것은 시민봉사실 직원이 이 업무를 관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2가동 직원이 파견나와서 업무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수수료의 차이)

○丁昌熙委員 수수료의 차이는 없죠.

(○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여기서 하면 60원이고 1·2가동 동장 명의로 하면 600원인가 되니까 수수료 차이가 나지.)

○丁昌熙委員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거주 동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60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 와서 발급하게 되면 1·2가동 동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600원인가 천원인가 받죠.)

○丁昌熙委員 아니죠. 똑같은 거지

(○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아니야, 그렇게 받는다니까. 관할 동이 다르면 수수료가 더 비싸요.)

○總務課長 尹守鉉 1·2가동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도 600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타시도의 것은 600원이고 우리 구청의 것은 60원이고.

(○ 洪承台委員 議席에서 - 삼청동에서 와도 60원을 받는다는 거죠?)

(○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똑같아요.)

○丁昌熙委員 관내는 다 60원이라구요?

(○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타동은 더 받는데. 그것을 확실히 시민봉사실에 문의를 해봐. 거주 동이 아니면 600원이라니까 그래.)

○丁昌熙委員 이 요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總務局長 吳炳漢 요금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금 체계가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서 발급할 때에는 원부가 있고 바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60원을 냅니다. 그런데 타 시, 군, 구, 읍, 면, 동에서 발행하는 것은 전산케이블을 써야 되고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區廳에서도 여기는 원부가 없기 때문에 6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럼 區廳長 명의로 발급이 돼도 요금에는 차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總務局長 吳炳漢 네.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예를 들어 區廳長 명의로 하게 되면 종로구 관내 주민이 어느 동에서 와서 발급을 받아가든지 동에서 받는 것처럼 똑같이 60원에 발급을 받는 게 아니라 600원에 발급을 받는 거고, 또 1·2가동에서 파견나와서 지금 현재 하는 것도 1·2가동 주민을 제외하고는 600원을 받겠네요? 그렇지요?

○總務局長 吳炳漢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주민들한테 수수료 부담이 1·2가동 주민도 60원 내던 걸 600원을 내야 되는 부담이 더 증설되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總務局長 吳炳漢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종로 1·2가동 직원이 여기 1명 파견나와서 발급했던 것을 잠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봉사실 직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민봉사실 직원의 명의로 검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丁昌熙委員 以上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吳錦南委員! 질의하세요.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개정(안)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구에서 개정이 되어 심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행은 내무부에서 2월 중순경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總務局長 吳炳漢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區廳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하고 있는데 누구 명의로 발급을 하느냐 하면 종로 1·2가 동장 명의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개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區廳長 명의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삼청동에 가서도 지금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4분기 내에 발급하던 것을 어느 동, 각 동에서 과거와 현재와의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95년 9월 10일부터 1·2가동 동장 명의로 발급한 등·초본 실적은 1일 평균 69건에 108통을 발급을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권과가 내 자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중앙청사도 있기 때문에 각종 정부에서 오는 민원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지 않아서 가까운 동에 가서 떼오라고 하면 저희 사직동에서 끊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직동에는 현재 그 민원이 3분의 2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점을 알고 계시는가?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 증원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려다가 잊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발급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우리 직원 문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종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이 전국 온라인이 되고 정부에서부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자동차 등록 업무까지도 우리 도심에 區廳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타구의 민원인까지 와서 우리의 업무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국 온라인 전산망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특히 우리 세종로동, 종로1·2가동, 3·4가동에 업무발당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安哲柱委員! 질의하세요.

○安哲柱委員 安哲柱委員입니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관해서 봤을 때에는 주민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가동 동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의 신분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절차 발급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2항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18조의 여기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18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 등에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 제정 단계만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었고 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현행 위임조례 제2조2항에 의해서도 현행 구청장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산조직에

의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동안에 종로 1·2가 동장 명으로 발급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吳炳漢 安哲柱委員님 질문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2항에 의해서 굳이 구청장이 발급을 할 수 있다 하는

○安哲柱委員 참고로 18조3항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파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고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는데 이미 종로구청장이 이 법적사항 그리고 이미 이야기했던 동위임조례에 의해서도 區廳長이 충분히 區廳長의 명으로 발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1·2가동장 명으로 이제까지 발급했다는 것은 행정쪽의 무슨 잘못 아닙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그러니까 2조2항은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고

○安哲柱委員 법리해석상으로 봐서도 현재의 주민등록법과 그 다음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사항으로 봐서도 충분히 區廳長께서 등·초본에 대한 것을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總務局長 吳炳漢 2조 사무의 관장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의무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데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것은 구청장의 위임되지 않은 고유권한으로 봤을 때 지금 현행법규로 봐서 발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95년 9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50명씩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실정인데 거기에 굳이 종로1·2가동장 명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總務局長 吳炳漢 우리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에 관한 것은 자료의 통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부가 등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安哲柱委員** 지금 總務局長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표의 작성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적지 확인이 끝나면 개개인별로 주민등록표가 작성이 되지요? 그러면 작성된 그 모든 자료는 전산 입력화됩니다. 그래서 원부를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한테 가서 자기 서류에 대한 것은 어느 사항이든지 다 열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표를 단지 동사무소에서 보관했을 뿐이지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이미 전산 입력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산정보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위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오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그대로 있는 원부에서 복사해주는 그런 절차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것을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거주동에서 받았을 적에 60원, 전산을 이용했을 적에 600원 그 요금상의 차이뿐이 없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 조례나 굳이 개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구청장 명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조례보다도 모법인 주민등록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미 주민등록법상 나와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제가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洞政係長 李宗仁** 동정계장입니다. 지금 安哲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 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 권한위임 제2항에 대해

서 말씀하셨는데 법 제18조2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지금 이 사항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것과고는 별개의 사항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동장한테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요구기관에서 시, 군, 구청장에게 요구될 때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등·초본 발급하는 것은 주민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써는 함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安哲柱委員** 여기 나와있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주민등록 사무 전체에 관한 전산업무입니다.

○**洞政係長 李宗仁** 그 의미는 전산자료 제공을 이용한 별도의 법에 의해서 출현되는 사항이고 어떠한 요구기관에서 어떤 전체적인 것을 요구할 때 이 전산이용에 대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요구된 기관에 제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료하고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개념차이가 다른 겁니다.

○**安哲柱委員** 그런데 주민등록 작업을 할 때 통계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기초자료가 입력이 돼야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전체 전산 업무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이게 조례 개정 당시에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 때문에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모법인 주민등록법상으로도 구청장 명으로 발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거는 법리해석상.....

○**總務局長 吳炳漢**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증명의 발급은 기관이나 발급자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어떠한 조례개정을 하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以上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朴文培委員! 질의하세요.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발급으로 인한 폐단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발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600원씩 해야 된다는 어떤 조례개정이나 상부의 지침사항이 있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지침이 있었습니다. 내무부 규칙에 거주지 동에서 발부를 하지 않는 타 시, 군, 구, 동, 읍, 면이 있습니다.

○**朴文培委員** 조례규정상의 수수료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600원씩 받았다 하는 사항은 조례로 나간 바가 없고 상부의 지침사항으로 그렇게 돼서 받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주민등록법의 조례를 통해서 600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썽없이 넘기기 위한 하나의 조례 상정인지 아니면 구청장 명으로 나가든지 동장 명으로 나가든지 그동안 1·2가 동장 명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꼭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민원의 편의도 다 제공했다고 보는데 왜 이것이 굳이 조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구청장 명으로 나가든 동장 명으로 나가든 주민의 편의를 다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600원을 차등해서 받기 위한 방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동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적 발행인의 책임성이 부여돼야 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전자에 주민등록 발급으로 인한 어떠한 폐단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대로 놓고 묵시적으로 시행을 해도 조례를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일반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대해서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 가기는 너무 시간이 걸린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구청이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등·초본을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

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주민의 편의를 돕고 아울러 현재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각 동에 주민등록망이 설치되면 각 실·과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 첨부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민원이 우리에게 신청할 때 등·초본 첨부를 의무화하지 않고 저희 실·과에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등·초본을 우리가 직접 발급을 받아 가지고 첨부하면 민원도 빨리 해결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제도 개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朴文培委員** 이것이 600원이나 60원이나 하는 차이 때문에 문제가 돌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면에 있어서 우리 구 주민이라면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는 논지를 펴고 싶고, 왜냐하면 그것이 민원을 위한 민원을 서비스라고 하면 금액이 같아야지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무슨 서비스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동장 이름으로 나간 건 60원인데 구청장 명으로 나간 것은 600원이라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반드시 조례를 통해서 600원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부의 지시 명령의 요구사항은 조례를 거치지 않으면 이건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점도 아울러 관할 局長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입니다. 우선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내무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전산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전국 주민들이 전국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내역을 해서 이 업무가 순수하게 지방자치의 업무라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겠지만 거대한 전산망을 내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만약 우리 주민들이 부산에 가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합성이나 저희들 지방자치의 개별성을 위해서 이런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금이 우리 구청에서 발급을 하니까 우리 주민에 한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洪承台委員! 질의하세요.

○洪承台委員 네. 洪承台委員입니다. 현재 600원 받는 거 말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하면 600원을 받고 각 주민이 동회에서 할 때에는 6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원을 받는 것은 내무부 상위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시행규칙이 우리 종로구의회 의 조례에 이것이 통과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와 같은 것을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의 조례에 통과될 수 있는 것은 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처리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洪委員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민등록 전국 전산망의 기능이 전국화해서 막대한 전산망 경비를 내무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걸 했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전산망 시스템을 정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구청만 독립적으로 돼 가지고 사실상 불이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다른 내무부 상위시행령도 중요하지만 다른 구청이야 어쨌든 간에 종로구는 종로구답게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을 때 시행령에 600원을 받겠다는 것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이 이 조례개정안의 마땅한 방법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전자정보 시대가 되어 가지고 사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각 실에서 모든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해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이러한 정보화 시대

가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온다 이러한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구청장이 하나 동장이 하나 하등의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1·2가동 주민이 되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종로1·2가동 주민은 60원으로 할 걸 600원을 내야 될 불이익을 보고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동장이 해도 아무 민원의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구태여 조례개정안을 내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무부 상위법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 이걸 통과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그런 것은 우리가 원칙적인 면에서 민의에 편리하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지 편익에 불합리한 것을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洪委員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과나 산업과에서 인허가를 해줄 때 대개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공무로 발급하면 수수료 없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의무적으로 등·초본을 첨부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등·초본 발급하는 제도의 개선이 됨으로써 그런 부수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제도가 생긴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예, 丁昌熙委員 질의하십시오.

○丁昌熙委員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과 그동안 질의 답변을 총 종합해보니까 지금 구청장 명의로 발급한다는 것이 필수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종로구가 아닌 타지역 거기에서는 타지역 거기에 위임된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발급

하려면 우리 구청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는 사항의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종로구 각 동 주민들은 종로구 각 동의 동장 명의로 21개 동 관인을 만들어서 찍어서 60원씩 받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겹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종로구청에서 발급을 한다고 해서 그 관인 21개 새기기 번거롭고 직원들이 번거롭다고 해서 구청장 명의로 단순히 종로구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신청을 구청장 명의로 해줄 게 아니라 21개 동 각 동의 동장 앞으로 오면 60원씩에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의 그 요지는 전국으로 지금 주민등록 발급 업무가 위임된 사항으로 각 지역에 있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군수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21개동을 여기에다 다 관인 직인 다 만들어놓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인 관인 관리가 쉬운 게 아니고 또 우리 조례 개정함으로써 구청장 명의로 관할 안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발급함으로써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종로1·2가동이 이제까지는 직원 한 명이 와가지고 먼저번에 시민봉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이 업무를 각 21개 동이면 21개 동에서 한 명씩 우리 시민봉사실에 출장을 나와서 발급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丁昌熙委員 아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구청에서 시민봉사실 직원이 이 업무를 다룬다 하더라도 어느 동에서 오든지 간에 그 동의 동장님 관인을 찍어서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민선 구청장 시대에 종로구청이 열린 구청으로 앞서가는 구청으로 해서 타구에 앞서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서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더 발전시켜서 우리 종로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편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마 민선 구청장이 갖고 있는 본연의 뜻일 거고 우리 21명의 구의원 전체가 갖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진지한 자세로 연구 검토해서 어떤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의 참된 길이나 하는 것을 연구해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개발해서 혜택을 주셔야지 이걸 관인을 21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한다면 또 그 알파한 수수료 몇푼 더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구 수익이 얼마나 크게 기여가 되는지 모릅시다라는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가 인구가 매년 격감해서 20만명밖에 안되는 이런 즈음에 조금이라도 행정서비스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타구의 타지역에 있는 주민등록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보완하는 그런한 기준이고 개정의 뜻이고 우리 종로구 관내의 주민을 위한 21개 동 각 동장의 관인을 새겨서 그 동장 명의로 발급을 해서 수수료를 60원씩 이렇게 받고서 발급해줄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종의신 지적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시다라는 21개 동의 직인 관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실 관리상 큰 어려움이 있고 인력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내무부에 하문해서 수수료 시행규칙이 거주지 동이 아닌 시·군·구·동·읍·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좀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구청장이 자기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할 때 60원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와 협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실제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의신 지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朴文培委員 議席에서 - 위임된 사항인데 그것이 내무부 지침을 받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주민등록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내무부령으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이 등·초본 발급은 저희들 조례에 정했지만 큰 뿌리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법에 정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丁昌熙委員 議席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우리 자체적인 토론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委員長 玄壽漢 丁昌熙委員 제안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培委員 議席에서 - 토론 끝내고 하죠.)

○委員長 玄壽漢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議席에서 - 표결을 좀 늦추죠.)

○委員長 玄壽漢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반복해가지고 시간만 허비했는데

(○朴文培委員 議席에서 - 그게 아니라 진지한 토론을 한 걸로 해서 표결로 결정합니다.)

○委員長 玄壽漢 이의 없으시죠?

(○丁昌熙委員 議席에서 - 토론 종결했으면 이의가 있어도 얘기할 수가 없죠.)

○委員長 玄壽漢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12時 13分)

○委員長 玄壽漢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님이 연가 중이므로 財務課長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司空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玄壽漢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財務課長 司空坤입니다. 오늘 제59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휴가 중인 財務局長을 대신하여 小職 財務課長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는 한편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현행 구세조례 중 운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임대주택사업의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에 '그 부대복

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감면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둘째, 동조 제2항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중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문 중에서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에 중복감면 배제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폭이 큰 것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 운영으로 구 세입 증대 확충으로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본건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433 |
|----------|-----|

제출년월일 1996년 5월 일  
제 출 자 종로구청장

#### 1. 개정이유

현행 구세감면조례 중 운영 미비점 등을 개선  
· 보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사업의 주택건설촉진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인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음
- 제18조에 동일한 과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였음

#### 3. 관련근거

- 내무부세제 13400-126('96. 3. 21)
- 서울시세정 13400-191('96. 3. 28)
  - 서울특별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4.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구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 검사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br>.....<br>.....<br>.....<br>.....<br><u>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에 .....<br>.....<br>.....<br>.....<br>..... |
|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 <신설>                                                                                                                                                                                                                                                                                                                                                                                                                                                              |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시행규칙) .....<br>.....                                                                                                                                                                                                |

○委員長 玄壽漢 財務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6년 5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1995년 12월 6일자로 새로이 신설된 지방세법 제294조의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조례에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행 구세감면조례 중 제11조에 임대주택 감면 조항의 감면대상 어구 표현을 좀더 구체화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골자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제294조의 규정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개괄적 규정 어구 표현으로 되어 있는 아래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번째는 제11조제1항에서 '부대복리시설'이라고 종전에는 표현했던 것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화한 규정이고, 제11조제2항에서는 종전에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어구 표현을 구체화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4조입니다. 중복감면의 배제 내용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 세정 13400-126호로 1996년 3월 21일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안과 현행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자구 표현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해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현재 면세 세대가 몇 세대인지 밝혀주시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몇 세대가 더 늘어나며 거기에서 늘어나는 세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賦課1課長 康聖喆 賦課1課長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로구 관내는 대상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은 공동주택 5세대 이상이 해당되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한두어 채 정도 연립 같은 경우는 세를 놓지만 5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라든가를 갖고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대표적으로 공무원아파트 이런 것입니다. 강남 또는 노원, 강서 그 다음에 서초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세부적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앞으로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는 한 세대도 없다는 말입니까?

○賦課1課長 康聖喆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세대도 없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財務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 전원은 5월 28일 11시에 개최되는 심사보고서 채택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散會)

○出席委員 11名

玄壽漢 洪起瑞 安哲柱 吳錦南 千相旭  
沈載得 鄭泰淳 洪承台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吳 炳 漢  
總 務 課 長 尹 守 鉉  
財 務 課 長 司 空 坤

賦 課 1 課 長  
洞 政 係 長

康 聖 喆  
李 宗 仁